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0. 8. 20 선고 2019가단5455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진경

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만

변론 종결 2020. 7. 16

판결 선고 2020. 8. 20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5,310,0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부분 송달
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전제되는 사실관계

가. 원고는 1953. 12. 29. 서울 구로구 B 구거 1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C로부터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다.

나.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구로구 D의 일부로서 차가 통행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.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9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청구

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.

그 이득액은 2019. 3. 22.부터 같은 해 11. 11.까지 차임 상당액인 5,310,010원이다.

3. 판단

가. 관련법리

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, 우선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 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고, 또한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사유지상에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한 때에는 이 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다(대법원 1991. 3. 12. 선고 90다5795 판결,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).

나. 을 제1, 5, 6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2004. 3. 2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서울 양천구 E 외 72필지 18010㎡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사실,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기반시설 중 도로로 결정되어 도로로 설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위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결정된 도로는 도시계획시설로서(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)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를 설치하는 사업은 도시계획사업(위 법 제2조

제10호, 같은 조 제11호 가.목)이므로,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되었고 따라서 위 양천구가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한다고 할 것이다.

달리 피고가 도로법에 의하여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을 하였다거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도로를 설정하였다고볼 증거가 없다.

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,갑 제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피고가 2018. 8. 위 D 앞 측구를 정비하고, 2017. 7.경부터 2018. 6.경까지 위 D의 횡단보도,주차금지선,과속방지턱,문자,버스 노면표시 등을 도색 또는 신설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.

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지 않던 이 사건 토지상에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그 토지를 일반공중의교통에 공용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그렇다면,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.

4.결 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,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윤지숙